

대리점분야 표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

(2023. 5. 3.)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라 한다)은 서울우유 고객센터(이하 “고객센터”라 한다)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서울우유와 고객센터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서울우유와 고객센터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대리점거래법령”이라 한다) 등 대리점거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서울우유는 고객센터와의 고객센터 계약이 공정하게 체결·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① 서울우유는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등 고객센터가 수령하는 금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고객센터가 수령하는 금액의 항목별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를 포함한다), 고객센터가 수령하는 금액의 미지급사유 및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고객센터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② 서울우유는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고객센터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고객센터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항목별 지급사유,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금액의 감경·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경·면제사유, 감경·면제기준 및 해당 절차를 포함한다), 고객센터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③ 서울우유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계약해지와 관련한 고객센터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준수한다.

- ④ 서울우유는 고객센터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⑤ 서울우유는 위 ①부터 ④까지의 내용을 고객센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공개한다.
 - 고객센터가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기준, 고객센터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관한 내용은 협약체결 즉시 서면 또는 전산으로 제공하며, PRM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

제4조 (범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서울우유는 대리점거래법령 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① 서울우유는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범위반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가. 고객센터 계약 체결시 서울우유는 고객센터거래약정서, 부속약정서 및 그 밖에 계약 관련 서면자료를 즉시 고객센터에 교부하거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서울우유는 고객센터가 자신의 주문내역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제품 및 기타(장비, 판촉물 등))
- ② 서울우유는 대리점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③ 서울우유는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사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 ④ 서울우유는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신속·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5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 서울우유는 고객센터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한다.

- ① 자금지원
 - 고객센터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우유 농협을 이용한 저리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또는 제도를 개선한다.
- ② 고객센터의 매출 확대 지원
 - 가. 고객센터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냉장비, 냉장/냉동장비, 근무복 등을 제공한다.
 - 나. 고객센터 매출 확대를 위한 온라인 가정판매 주문 사이트를 운영한다.
 - 다. 미거래 거래처의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개척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타 지원

- 가. 고객센터의 경조사, 자녀 학자금 등의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 나. 고객센터 단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시행한다.

제6조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고객센터는 서울우유와 고객센터 거래를 함에 있어 협력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① 고객센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 ② 고객센터는 매출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③ 고객센터는 서울우유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 ④ 그 밖에 고객센터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고객센터와 서울우유가 정한 사항에 대해 고객센터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 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서울우유의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고객센터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협약기준 준수) 서울우유와 고객센터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0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서울우유는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대리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서울우유는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2023년 5 월 3 일

(서울우유)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문진섭

(인)

(고객센터)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강철영 (인)

서부지점 대표고객센터

기훈종 (인)

경인지점 대표고객센터

정용균 (인)

동북부지점 대표고객센터

김종갑 (인)

강남지점 대표고객센터

허창수 (인)

남부지점 대표고객센터

이정석 (인)

강서지점 대표고객센터

김창모 (인)

강원지점 대표고객센터

한종희 (인)

대전지점 대표고객센터

박태순 (인)

광주지점 대표고객센터

윤종호 (인)

전북지점 대표고객센터

이완식 (인)

대구지점 대표고객센터

민정욱 (인)

부산지점 대표고객센터

김주식 (인)

경남지점 대표고객센터

이종성 (인)

가공품1지점 대표고객센터

이면희 (인)

가공품2지점 대표고객센터

차은섭 (인)